

광주 다음달 자동차 번호판 대란 오나

“저가 입찰에 적자 누적” 발급대행업체 3곳 모두 폐업 신고
최소 이윤 보장 요구…택시 등 신규 차량 번호판 못달아 혼란

광주지역 자동차 등록번호판 발급대행 업체들이 해마다 급증하는 적자 손실을 감당하지 못하겠다며 폐업에 나섰다. 광주에서 자동차 등록번호판 발급대행업체들이 폐업에 나선 것은 전국적으로 처음이다.

폐업이 현실화하면 당장 다음달 14일부터 광주지역 개인택시·시내버스 등 신규 영업용 차량 운행이 중단되고, 새로 구입한 자동차도 광주에서 번호판을 발급받을 수 없게 될 것으로 우려된다.

15일 광주시 등에 따르면 자동차 등록번호판 발급대행업체 3곳은 지난 12일 광주시에 폐업신고서를 제출했다. 광주시가 업체의 영세성을 감안하지 않은 저가 입찰 방식을 유지한데 따른 적자 누적이 이유다.

이들 업체는 지난 2012년 전국 최초로 ‘광주시 자동차관리사업 등록 및 등록번호판 발급대상자 지정 조례’ 개정에 따라 5년간 광주시의 발급대행 업체로 지정된 데 이어, 지난해 7월 발급대행 업체로 재선정(대행기간 5년)돼 자동차 번호판을 제작, 발급하고 있다.

현재 업체들의 번호판 제작 수수료는 대형(7700원)·중형(7100원)·소형(2400원)이다. 지난 2012년 계약 당시 대형(9600원)·중형(8800원)·소형(3000원) 수수료보다 1900원·1700원·600원씩 20% 가량 인하된 금액이다.

‘등록번호판 발급대상자 지정 조례’ 개정 전인 2012년 이전엔 수수료가 대형(1만 2100원)·중형(1만 1000원)·소형(3500원)이었으나 매년 수수료가 낮게 책정돼 현재 가격에 이르렀다.

실제 이들 업체가 지난해 11월 각종 요금 요율산정·원가계산 등 비영리 종합학술연구기관인 (재)한국산업관계연구원에

자비 1000만원을 들여 원가조사를 의뢰한 결과, ▲대형(자가용) 제작원가 7898원 ▲중형 7348원 ▲소형 6743원으로 산출됐다. 실제 연구원의 원가책정에 따르면 업체들이 받아야할 수수료는 차종에 따라 최소 6743원에서 최고 1만576원이었다.

광주의 자동차 번호판 제작, 관리 비용은 타 시도에 비해서도 매우 낮다는 게 업체들의 주장이다.

지난 2016년 기준 광주(63만3375대·번호판 주문량 8만4000장)와 차량등록 대수가 비슷한 대전(64만8084대·~ 8만장)은 대행업체 수가 2곳으로, 각 교부소에선 해당 지자체 직원이 직접 교부하고 있다.

반면 광주는 대행업체가 각 지자체 교부소에서 사무실을 임대한 뒤 자사 직원을 파견, 근무토록 하고 있어 사무실 운영비, 인건비 등이 경영압박 요인이 되고 있다. 이들 업체들은 직원 3~5명이 근무하는 사실상 한계기업으로, 월매출이 1000만원 안팎이다.

결국, 적자누적으로 직원을 해고해야할 처지에 몰린 업체들은 제작원가 이하의 낙찰을 유도하는 입찰방식을 재고해줄 것을 광주시에 수차례 건의했다. 최소 불가인상률, 인건비 상승분이라도 감안해달라는 것이다.

하지만 광주시는 애초 계약 약정 수수료를 주장하면서 원가 조정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원가 인상이 시민들에게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도 작용했다.

광주시와 원가조정에서 접점을 찾지 못하자 이들 업체는 폐업을 택했다. 관련조례상 발급대행자는 등록번호판 발급대행 업무를 폐업할 땐 30일 전까지 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면 된다.

폐업이 확정되면 다음달 14일부터 시내버스·택시·화물차 등 신규 영업용 차 등



15일 광주시 한 구청 자동차번호판교부소에서 한 운전자가 차량 번호판 발급을 위해 서류를 제출하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은 번호판을 발급받을 수 없게 된다. 자동차관리법(제10조·자동차등록번호판)상 등록번호판의 부착 또는 봉인을 하지 않은 자동차는 운행을 금지하도록 돼 있다.

광주 A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대행업체 관계자는 “공공기관의 입찰 기준을 보면 발급수수료 가격을 낮출 수밖에 없다.

가격 경쟁이 심하다 보니 큰 폭으로 입찰가를 낮추게 되고 업체들은 낮아진 낙찰가에 따라 손해를 볼 수 밖에 없는 구조”라면서 “영세 기업의 처지를 생각해서라도 최소 이윤을 보장해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충행기자 golee@kwangju.co.kr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비게방 지하주차장, 도로 해당 안돼…무면허 운전 아냐”

아파트 주민만 이용할 수 있는 비게방형 지하주차장은 관련 법이 정한 도로가 아니므로 면허가 없는 사람이 자동차를 운전해도 무조건 무면허 운전으로 간주해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15일 도로교통법상 무면허 운전과 음주운전 및 공무집행방해·상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양모(23)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춘천지법 강릉지원 형사항소부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아파트 단지 안에 있는 지하주차장이 아파트 주민이나 용건 있는 사람만 이용할 수 있고 경비원 등이 자체적으

로 관리하는 곳이라면 도로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다”며 “양씨의 운전행위는 도로교통법이 금지하는 무면허 운전엔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무면허인 양씨는 지난해 5월 술에 취한 채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약 50m가량 자동차를 운전한 혐의(무면허 운전·음주운전)로 기소됐다. 그는 신고를 받고 온 경찰관이 음주측정을 요구하자 목 부위를 손으로 때린 혐의(공무집행방해)도 받았다.

1·2심은 적용된 혐의가 모두 유죄라고 판단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무면허 운전이 아닐 수 있다며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다.

／연합뉴스

거짓말의 말로

외도 들키자 되레 성폭행 허위 신고 등
광주지검, 무고·위증 사범 34명 적발

#1. 여성 A씨는 함께 활동하는 인터넷 동호회원 B씨에게 강간을 당했다며 고소장을 접수했다. 하지만 검찰은 고소인 A씨가 B씨에게 안겨 걸어가는 CC·TV 영상과 성관계 이후 고소 전까지 일상적인 ‘카카오톡’ 대화를 주고받은 자료 등을 확보했다.

A씨는 검찰 조사에서 “B씨가 다른 여성을 사귀면서 자신을 소홀히 해 화끈에 고소하게 됐다”고 자백했다.

#2. C씨는 자신의 명의로 보험가입계약서 4건을 위조·행사했다며 보험모집인 D씨를 고소했다. D씨는 C씨가 해당 보험사 상담원에게 직접 보험가입 동의 의사를 밝힌 녹음자료 등을 확보해 허위 고소라는 사실을 입증했다.

C씨는 “수년간 보험가입 등을 통해 보험모집인 D씨를 업무적·금전적으로 도와왔는데도, 자신이 교통사고로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도와주지 않아 허위고소를 했다”고 진술했다.

광주지검은 “지난해 8~12월 집중 수사를 통해 무고사범 19명, 위증사범 15명 등 34명을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검찰은 이 가운데 8명(무고 7명, 위증 1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22명(무고 12명, 위증 10명)을 약식 기소 처분했으며 4명은 불구속 입건했다.

무고 중에선 성범죄 관련 사범이 11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들은 합의 성관계를 하고 이별통보를 받거나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 등으로 성폭행 허위 고소를 했다. 또 내연남, 동료 직원, 친목모임 회원과 성관계를 했다가 남편이나 남자친구에게 발각되자 성폭행을 당했다며 허위 고소를 하기도 했다.

최근 성폭력 피해자가 수사 초기부터 국선변호인 조력을 받는 등 지원이 강화되면서 이를 악용해 성폭력 피해를 위장한 사례가 늘고 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평소 갈등관계에 있는 자를 폭행으로 허위 고소하거나, 난폭운전을 신고한 자를 보복한다며 고소한 사례도 있었다.

위증사범은 총 15명으로 지인이 폭행이나 교통사고 등으로 수사와 재판을 받은 과정에서 지인을 돕기 위해 폭행이나 사고를 낸 사실이 없다며 허위 진술한 사례들이 대부분이었다.

광주지검 관계자는 “거짓말은 반드시 대가를 치른다는 인식이 확립되도록 무고·위증사범을 지속적으로 단속하고 죄질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최저임금 무시 시급 3330원 준 업주 벌금 200만원

올해 최저임금이 7530원으로 인상된 이후 지난 2년여간 최저임금에 훨씬 못 미치는 3300원의 시급을 종업원에게 지급해온 영업주가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5단독 정영훈 부장판사는 최저임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9)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부산에서 공영주차장을 운영하는 A씨는 2014년 3월부터 2016년 11월까지 2년8개월간 종업원 B씨에게 당시 최저임금보다 1905~2705

원 모자란 시급 3305원을 적용해 임금을 준 혐의로 기소됐다.

이 기간 정부가 정한 최저임금은 2014년 5210원, 2015년 5580원, 2016년 6030원이었다.

A씨는 또 2016년 11월 퇴직한 B씨에게 잔여 임금과 퇴직금 등 3080여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근로기준법·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도 받았다.

관련 법은 근로자 퇴직 시 지급기일 연장 합의가 없으면 사용자가 14일 이내에 임금·퇴직금 등을 지급하도록 규정했다.

／연합뉴스

절도죄 출소 두달만에…40대 여성 교회서 또 ‘슬쩍’



○…절도죄로 만기출

소한 지 2개월 만에 또

다시 남의 물건을 훔친

40대 여성이 경찰서행.

○…15일 광주남부경찰에 따르면 서

모(여·44)씨는 지난 12일 오전 11시30분

께 광주시 남구 월산동 한 교회 회의실

에서 문모(여·59)씨의 휴대전화와 신용

카드 두 장을 몰래 가져갔다.

○…지난해 11월 절도죄로 만기출소한 서씨는 모텔에서 지내던 중 생활비가 떨어지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는데, 경찰에서 “날씨가 춥고 구직활동이 여의치 않자 남의 물건에 손을 댔다”고 진술.

／김한영기자 young@kwangju.co.kr

최고의 투자가치 / 자신있게 추천 / 사정상 **급매** 합니다.

- 전북 순창군 구림면 화암리 411-10번지외 10필지 (월정 삼거리 코너, 구 월정초등학교 자리)
- 대지 5843평, 건물 512평
- 계획관리지역/ 학교용지 등등
- 현재 관관농원/ 펜션/ 식당/ 캠핑장 운영중
- 2차선 도로접, 삼거리 코너, 계곡등 최고의 위치
- 연수원/ 수련원/ 요양(병)원/ 펜션/ 캠핑장 등등 모든 용도개발 가능
- 시세 30억, 급매 20억 (일시불 조건)
- 주인직매 010-3605-5000

